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04
----------	-------

발의연월일 : 2026. 6. 25.

발 의 자 : 김종양 · 이달희 · 서천호
고동진 · 정희용 · 안상훈
김성원 · 박덕흠 · 한기호
윤영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목록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면서 숙박업의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에 객실 수 등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객실 수 등에 관한 자료의 부재는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방당국이 투숙객 인원을 파악하는 데 있어 어려움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목록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숙박업을 신고하는 경우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에만 해당한다]

3. 교육수료증(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 에 관한 자료(숙박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7.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숙박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숙박업의 신고를 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u>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u></p>	<p>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u>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u> 2. <u>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u>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에만 해당한다]

3. 교육수료증(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에만 해당한다)

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
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
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
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
만 해당한다)

5.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철도사업자(도시철도
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
류(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
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
에 관한 자료(숙박업을 신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7.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
청서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